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3
----------	------------

제출년월일 : 2001. . .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급변하는 21C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에 필요한 3개 학과가 증설됨에 따라 학사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원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315명 ⇒ 2,318명(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1,372명(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850명(변동없음)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명 ⇒ 44명(3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변동없음)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283명”을 “2,31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70명”을 “1,372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820명”을 “850명”으로 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61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2,362”을 “2,394”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중 “1,446”을 “1,448”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820”을 “8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이양 업무추진 전담인력을 위한 정원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315</u> 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내지 2 (생 략)</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 공무원의 정원 : <u>41</u>명</p> <p>4 (생 략)</p> <p>부 칙(2000.12.30 조례 제2629호)</p> <p>제1조 (생 략)</p> <p>제2조 (생 략)</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2,394</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내지 2 (생 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41</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생 략)</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94</u>	1 내지 2 (생 략)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u>41</u>	4.(생 략)		<p>제2조 (정원의 총수).....<u>2,318</u>명.....</p> <p>1 내지 2 (현행과 같음)</p> <p>3. ----- ----- : <u>44</u>명</p> <p>4 (현행과 같음)</p> <p>부 칙(2000.12.30 조례 제2629호)</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u>2,397</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내지 2(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u>44</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명)	-----	<u>2,397</u>	1 내지 2(현행과 같음)		3.-----	<u>44</u>	4.(현행과 같음)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94</u>																				
1 내지 2 (생 략)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u>41</u>																				
4.(생 략)																					
구 분	정 원(명)																				
-----	<u>2,397</u>																				
1 내지 2(현행과 같음)																					
3.-----	<u>44</u>																				
4.(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제20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